

FIP 전시회 우주항공우취 전시작품 심사를 위한 특별규정

제1조 경쟁부문 전시

FIP 전시회 경쟁부문 전시작품 심사 일반규정(GREV) 제1조 4항에 의거하여 우주항공우취에 관한 원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특별규정을 제정한다. 우주항공우취에 관한 전시작품 심사지침도 참고한다.

제2조 경쟁부문 전시작품(GREV 제2조 참조)

우주항공우취 작품은 우주개발 및 우주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역사적,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 의거하여 구성된다.

제3조 전시작품 구성의 원칙(GREV 제3조 참조)

우주 항공우취 작품에 합당한 우취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우정 당국이 성충권용 기구, 로켓, 우주선, 로켓 비행기, 회수용 선박, 구조헬리콥터 그리고 기타 항공기를 지원하는 수단 또는 그 반대의 수단에 의해 전달된 우취자료
2. 다음과 같은 우주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 관계되는 로켓우편, 우편엽서류, 메일그램, 특별한 봉투와 카드에 관련된 우표와 전단지과 비네트, 관련 선구자, 우주항행체의 발사와 비행과 착륙, 참여하는 추적기지국과 선박과 지원항공기
3. 해당사건 장소에 위치한 우체국 및 해당사건의 정확한 날자의 일부인이 소인된 봉투와 카드는 우주항공우취의 특징 하나이다.
4. 우주항공우취 전시작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세부 항목들에 관하여는 전시작품 심사지침 제3조 4항 참조).
 - a) 개척기 시대로부터 우주 정복시기까지
 - b) 로켓 우편
 - c) 다음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
미국, 소련/옛 소련권 독립국가연합(러시아), 유럽, 중국, 기타 다른 나라
 - d) 무인 우주 프로그램
 - e) 유인 우주 프로그램

5. 설명문은 관련 우주인의 특별한 활동을 포함한 우주항행체의 정확한 기술적 정보, 날짜, 장소, 목적과 임무 등 모든 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계획 또는 작품의 개념은 작품소개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GREV 제3조 3항 참조).

제4조 전시작품 심사기준(GREV 제4조 참조)

- 전시작품의 처리(GREV 제4조 3항 참조)
- 정확한 기술적 전개를 하면 부가점수를 준다.
- 우취적 지식 및 개인적 연구와 탐구 (GREV 제4조 5항 참조)
- 우주탐사와 우주비행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된다.

제5조 전시작품의 심사(GREV 제5조 참조)

1. 우주항공우취 전시작품은 GREX 제5장(제 31조~47조)에 의거 각 분야의 인정받은 전문가에 의해 심사 받는다. (GREV 제5조 1항 참조)
2. 우주항공우취 전시 작품들에는 심사위원의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항목들이 제시된다. (GREV 제5조 2항 참조)

○ 처리와 우취적 중요성	20/10	30
○ 우취와 관련지식, 개인적 연구와 탐구		35
○ 상태와 희귀성	10/20	30
○ 표현		5
계		100

제6조 종결규정(GREV 제6조 참조)

- 6.1 규정의 번역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영문본이 우선한다.
- 6.2 본 FIP 전시회 우주항공우취부문 심사 특별규정은 1985년 11월 5일 로마에서 열린 제 54차 FIP총회에서 승인되었다. 개정된 SREV는 1992년 5월4일 그라나다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비준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제3조 4항는 FIP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우주항공우취 전시작품 심사 지침

제1조 경쟁부문 전시

1.1 기본내용(GREV 제1조 1~4항 SREV 참조)

1.4.1 이 지침은 심사위원과 출품자들이 ‘FIP 전시회 우주항공우취 전시작품 특별규정(SREV)’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제2조 경쟁부문 전시작품

2.1 기본내용 (GREV 제2조 1~3항, SREV 참조)

2.1.1 우주항공우취 전시작품은 우주개발에 관련된 우취자료들로 구성된다. 우주항공우취작품은 주제의 전개가 아니라 성취권 탐사, 초기 로켓실험과 다양한 초기 우주선들을 포함한 우주 정복과정에서 성취된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우취적 연구로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대순 기록의 형태를 띤다.

제3조 경쟁부문 전시작품

3.1 기본내용 (GREV 제3조 1항, SREV 참조)

3.2 기본내용 (GREV 제3조 2항, SREV 참조)

3.2.1 전시작품은 에세이와 프루프는 물론 천공, 색도어러, 가쇄와 같은 우표의 다양한 사항을 포함한다.

3.2.2 인공위성에 의해서 전송된 메일그램, 달 주위와 달 표면에서의 붕괴, 성취권 우편 및 우주 우편, 그리고 로켓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들이 포함될 수 있다.

3.2.3 우주사건의 기념일을 위한 특별 소인은 사건 당일의 소인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3.2.4 위조된 것은 명백히 확인시켜야 한다.

3.3 기본내용 (GREV 제3조 3항, SREV 참조)

각기 다른 우주사건과 관련된 우편인의 발신지, 날짜, 시간에는 특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같은 사건에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우편인의 우취지식도 중요하다.

SREV 제3.3조와 관련해서는 아래 다음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련/러시아 우주 프로그램

3.3.1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로켓이나 우주선의 발사 장소 및 날짜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

- 3.3.2 1975년 이전에는 우주사건을 우주임무와 비행기간을 알려주는 우표, 우편엽서류, 특별소인된 봉피 및 카드에 의해 우주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 3.3.3 1975년 4월부터 우주정거장 발사, 공급 및 유인우주선을 기록한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에서 공식 일부인이 이용 가능하였다. 우주기지의 우편인들은 공식 통상회사의 것들보다 선호된다.
- 3.3.4 발사에 대한 우편인은 발사장소(우주기지)에서 가까운 우체국의 것이어야 하고 사건의 날짜가 있어야 한다.
- 3.3.5 우주우편이란 우주선에서 실려서 전달된 우취자료이다. 1978년 이후부터 우주정거장에서 우체국 기능을 하고 있다.
- 3.3.6 유인우주프로그램과 장거리 우주임무(발사 후)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이 있는 관계되는 임무관계소의 우편인을 사용할 수 있다.
추적기지와 임무에 참가하는 선박으로부터의 일부인도 임무수행기간 동안에 날짜가 기입되었다면 보충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 3.3.7 우주선의 착륙은 착륙지역에서 가까운 우체국의 우편소인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

미국 우주프로그램

- 3.3.8 발사, 착륙 혹은 기타 우주 활동들을 기록한 봉피와 엽서는 그것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의 우편인이어야 한다.
- 3.3.9 발사, 착륙 혹은 기타 우주 활동이 행하여진 그 시간에 우체국이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업무 날짜의 소인이 유효하다.
- 3.3.10 발사를 나타내기 위한 우편인은 발사 장소에서 가까운 우체국의 것이어야 한다.
- 3.3.11 미국내 로켓 발사기지외와 여러곳의 로켓 시험기지의 소인들이 유효하다. 1965-75년까지의 케네디 우주센터의 공식 NASA 까세가 들어간 봉피와 카드가 바람직한 자료이다.
- 3.3.12 우주선의 착수(착륙)를 기록하는 봉피 혹은 카드에는 회수선박내 우체국의 우편인이 우주인이거나 우주선 캡슐의 회수된 날짜와 함께 찍혀 있어야 한다. 선박내 우체국이 없다면, 착륙된 항구 또는 선박이 귀항 후 가장 가까운 보급기지의 우편인이면 유효하다. 회수에 참여한 선박, 헬리콥터 그리고(또는) 비행기 우편은 그 임무 기간중의 우편인이 찍혀야 한다. 회수선박의 봉피는 그 임무에 관련되는 추가적인 공식 까세를 가질 수 있다.
우주왕복선 착륙은 착륙기지에서 가까운 우체국의 우편인으로 기록될 수 있다.
- 3.3.13 미우주 프로그램의 범위내에 각기 다른 임무들(발사이후)을 위하여, 감독을 맡은 해당 임무통제센터의 우편인이 유인 프로그램, 지구궤도 위성과 달 및 우주탐사에 적용된다.
추적기지와 임무에 참가하는 선박의 우편인은 보충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식 카세를 가지는 봉투와 카드가 일차적인 대상이다.

유럽 우주프로그램

3.3.14 위성발사 및(또는) 탐사 및 실험 로켓발사를 기록하는 우편인은 유럽/미국 협력 프로그램과 유럽/소련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여러 다른 프로그램내에서 연대순으로 발사기지 우체국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추가 공식 ESA카세(1979년부터, 쿠루:Kourou)가 들어간 봉피가 특별 대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의 첫 우주로켓 A4/V2개발은 중요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우주탐사에 있어서 이 중요한 시기는 A4/V2의 발사 날짜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로켓의 건설 및 개발에 책임이 있는 군부대 또는 파견대와 관련된 장소의 우편인 및(또는) 추가적인 특정 마크가 들어간 우편인에 의해 기록될 수 있다.

3.3.15 발사 이후에는, 감시에 책임이 있는 임무통제센터는 보통 다름슈타트의 유럽우주운용센터(ESOC/Darmstadt)이며 오버파펜호펜에 있는 독일우주운용센터(GSOC/ Oberpfaffenhofen)도 있다.

각각의 국가 우주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국가의 임무통제센터가 책임이 있다. 임무에 참가하는 추적기지의 일부인은 보충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다.

중국 우주프로그램

3.3.16 초기에는 로켓이나 우주선의 발사 장소 및 날짜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

3.3.17 1986년 이전에는 우주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을 아는것은 불가능하였다. 발사기지의 우편인이나 우주사건의 날짜가 들어간 소인이나 사건에 관계된 특별소인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해서는 제3조 3항 3호에 언급된 우취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3.18 1986년 이후에는 우주선 발사에 대한 기록은 사건의 정확한 날짜의 발사기지에서 가까운 우체국의 우편인을 사용해야 한다.

3.3.19 회수가 가능한 무인위성 또는 유인우주선에 실려간 봉피는 사용가능하다.

3.3.20 무인 또는 유인 우주프로그램(발사 후)에 대해서는 우주선의 통제책임이 있는 임무관제센터에 관련되는 우편인을 사용할 수 있다. 추적기지과 선박, 지원항공기의 우편인은 보충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3.21 무인 또는 유인 우주선의 착륙은 착륙지역에서 가까운 우체국의 우편소인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

우주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타국가들

3.3.22 발사에 대해서는 발사장소에서 가까운 우체국의 우편소인이 유효하다.

국가 임무통제 센터의 일부인은 물론 로켓 및 성층권 기구의 임시발사 장소의 일부인도 있다.

3.4 기본내용(GREV 제3조 4항, SREV 참조)

우주 항공우취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자체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모든면을 포괄한다. 예시는 아래사항들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4 a) 개척시기부터 우주정복 시기까지

다음과 같은 전시작품으로 구성된다.

- 현대 우주개발과 우주비행에 자신들의 탐구로써 공헌한 바 있는 천문학과 과학자
- 초기의 시험 로켓, 주로 로켓우편 실험과 관련
- 로켓 개척자와 그들의 발명품들
- 무인 또는 유인 성층권용 기구 탐사 비행
- 실험 로켓 항공체의 비행
- 최초의 로켓 A4/V2의 발전(제3조 3항 14호 참조)
- 우주활동을 하는 모든 나라들의 로켓 및 위성발사

3.4 b) 로켓우편

이러한 전시작품은 그들의 기술과 과학적 발명으로 인하여 훗날 우주 정복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로켓 개척자들이 건조한 로켓에 의해 전달된 것들로 구성된다. 로켓 및 우주선에 의해 우주로 운반된 봉투와 편지는 물론, 로켓우편 비행을 목적으로 발행된 우편엽서류, 로켓우표, 비네트와 로켓으로 전달된 제한적인 신문과 메시지들은 사용할 수 있다.

3.4 c) 다음의 우주프로그램

1) 소련/러시아

- 로켓 개척자들과 그들의 발명품들
- 성층권 기구 탐사 비행
- 스푸트니크 1호에서 인터코스모스(Intercosmos) 프로그램까지 관련되는 선구자와 우주우편을 포함하여 여러 무인 및 유인 우주선의 프로그램들

2) 미국

- 로켓우편에 관련을 포함하여 로켓 개척자들이 수행했던 초기실험 로켓류
- 무인과 유인의 성층권기구 탐사와 실험 로켓 비행체의 비행
- 성층권과 우주로 비행한 봉투는 물론이고 관련된 선구자를 포함하여 무인 및 유인 우주비행 프로그램

3) 유럽

- 자신들의 법칙으로써 현대우주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천문학과 과학자들
- 여러나라들에 의해 수행된 로켓우편 실험
- 성층권 기구 탐사 비행
- 최초의 우주로켓 A4(V2)
- 몇몇 나라들 또는 때로는 미국 및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서 착수된 여러 가지 다른 과학적 목적을 위한 실험적 로켓 발사
- ELDO, ESRO와 ESA 프로그램
- 유럽우주발사체 아리안(ARIANe)
- 다국적 유인 및 무인우주비행 임무에 대한 유럽간의 협력

4) 중국

우주로 실려간 봉투는 물론 무인 및 유인 우주비행 프로그램

5) 다른 나라들

- 호주, 인디아, 일본 등 민간 또는 국가소유 우주프로그램과 발사 기지를 가진 국가들은

여러 종류의 로켓과 위성발사, 그들 임무의 목적의 기록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3.4 d) 무인 우주 프로그램

1) 천문학

- 다양한 사건들과 관련 선구자들의 기록으로 성층권기구, 로켓,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이용한 달, 태양, 흑성 그리고 은하계의 탐사

2) 기상학

- 다양한 종류의 기상위성의 발사 기록에 의한 현대의 데이터 수집 및 전송에 초점을 두면서 기상예보의 시작과 관측소 및 탐사기구와 고고도 탄도로켓의 사용

3) 전기통신

- 뉴스전송의 초기 방법에 관한 간략한 조사이후 초기 통신기구의 발사와 위성 시험비행에서 현재의 다양한 전세계적인 여러 종류의 통신 위성망까지 기술상의 발전을 보여준다.

4) 지구의 탐사

- 성층권 기구, 로켓 및 위성의 사용에 의해 모은 지질학, 측지학 및 지질학상의 자료 수집은 물론, 지구자기장 탐사상의 진전, 대기권과 방사대등이 이러한 탐사의 측면을 구성할 수 있다.

3.4d) 1-4와 관련된 전시작품은 상기 제목중 하나와 관련된 위성의 배치를 기록하는 우주항공우취 제품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Space Shuttle과 Ariane mission기간동안). 유인 우주 임무기간 동안의 우주비행사에 의해 수행된 연구작업과 관련된 우주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커버는 제3.4d)에 의거하여 설치된 전시작품에 적절하지 않지만 3.4e) 또는 3.4c)/1-2와 관련된 작품에는 전시될 수 있다.

5) 우주 정복의 시작

1957/58년의 국제지구물리학의해의 우주탐사프로그램의 시작과 1959년 국제지구물리학협력의 해는 이러한 연구 도입의 바람직한 방식이다.

3.4 e) 유인우주 프로그램

소련/러시아, 미국, 중국, 다국의 유인 우주비행은 우주비행사에 의해 수행되는 임무와 같이 이 연구의 기초이다. 모든 국가들 또는 한 국가의 우주사건들은 선택적으로 연대순으로 배치할 수 있다. 관련된 전구체들 예를들어 과학 및 의학 유인 성층권 기구 및 로켓 비행체 비행, 동물을 동반한 로켓 실험, 캡슐 회수, 잔존장비의 테스트, 위성 및 로켓의 시험 비행 등은 달 탐험 우주 탐사선과 같이 포함될 수 있다.

3.5 기본내용 (GREV 제3조 5항, SREV 참조)

3.6 기본내용 (GREV 제3조 3~5항, SREV 제3조 6항 참조)

전시된 대상들은 제목과 선택된 주제에 충실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작품 심사기준

기본내용 (GREV 제4조 1항~7항, SREV 제4조 3항 & 제4조 5항 참조)

제5조 작품 평가

기본내용 (GREV 제5조 1항~9항, SREV 제5조 1~2항 참조)

제6조 종결규정

기본내용 (GREV 제6조 1~2항, SREV)

종결

이 지침은 출판자들의 모든 의문사항에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심사위원과 출판자들이 규정을 이해하는 데에 보다 나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번역상의 어떠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 개정된 지침은 1999년 7월 우주항공우취분과의 대표와 FIP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2011년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